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25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김동아 · 김한규 · 허성무
안도걸 · 박민규 · 복기왕
이춘석 · 최혁진 · 채현일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

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6호의4까지의”를 “제6호의5까지의”로 한다.

6의5.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
보

부 칙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
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
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